

현장설명서

공사명 : 2024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
(외동DSC)

경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



현장설명서

1. 공사 개요

- 1) 공 사 명 : 2024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(외동DSC)
- 2) 위 치 :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제내공단길 14 현 외동DSC 부지내
- 3) 시 설 규 모 :

구 분	사 양
원 료 투 입	30톤/시간 호퍼스케일 2기
건 조 능 력	30톤/배치 순환식건조기 1기
이 송 라 인	30톤/시간 이송기기 26기

- 4) 공 사 기 간 :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 (시운전 포함)

2. 주요 시설 내용

- 1) 원료 반입 시설 (기존 사용)
- 2) 정선 및 계량 시설 (30톤/시간 호퍼스케일 2기 교체)
- 3) 화력 건조 시설 (30톤/배치 순환식건조기 1기 증설)
- 4) 저장 사일로 시설 (400톤 사일로 2기 도색)
- 5) 건벼 배출 시설 (기존 사용)
- 6) 집진 시설 (증설 순환식건조기 전용 백필터 1기 증설)
- 7) 공기 및 연료 공급 시설 (기존 사용)
- 8) 기계 자동 제어 시설 (기존 수정 및 보완)

3. 공사의 범위

발주자와 도급자간에 체결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1)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제시한 사항
- 2) 현장설명서에 제시한 사항

- 3) 발주자가 공사 이행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- 4) 계약서에서 제시한 사항
- 5) 공사 제외 사항
 - ① 수전 공사
 - ② 각종 인허가 사항

4. 구입 기계

- 1) 도급자는 기계설치 이전에 본 기계사양 및 성능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계 본체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.
- 2) 도급자는 본 기계의 부품의 조립이 완전무결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한다.
- 3) 기계의 보수 정비가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.
- 4) 구입기계 현장반입시 기기의 수량 조립상태 손상유무를 확실히 점검하고 하자는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설치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5) 시운전은 도급자가 실시한다.

< 구입기계 목록 >

품 번	품 명	규 격	수 량	설치	시운전	비 고
110A, 110B	호퍼스케일 (전기저항식)	30톤/시간	2SET	도급자	납품자	입고자 이름표시기 및 상부 보조탱크 포함
203	순환식 건조기	30톤/배치	1SET	납품자	납품자	터보송풍기, 건조기 기초 포함
413~415	백필터	200m ³ /min- 300mmAq (19kW)	1SET	도급자	납품자	로타리밸브(Ø300), 링브로워 송풍기, 댐퍼, 소음기, 레듀셔, 아크릴 점검창

- 도장 색상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제어 및 동력 라인은 케이블 덕트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배선을 하여야 한다.
- 소요동력이 15kW 이상인 기동은 Y-△ 기동방식으로 한다.
- 전기 제어 그래픽은 기존 시설까지 감안하여 제작 전에 감독자,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.
- 전선 규격은 국제 규격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6. 일반 사항

- 1)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자재 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인품 제품 등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2) 현장관리를 위하여 기계시설 및 공사 관련 업무에 유능한 직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3) 계약 체결 후 현장대리인계, 수급자내역서, 공정표, 착공계를 제출하여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4)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.
- 5) 기자재의 매설, 은폐부위 및 조립, 설치에 따른 시공과정의 주요부위는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앨범으로 정리한 뒤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물, 폐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7) 시공자는 현장안전사고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- 8) 타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(기계장치나 건축물의 벽체 관통 부위 등)
- 9) 임의로 변경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변경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10) 본 시설물과 관련하여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.
- 11) 공사준공은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계 제출 및 법인이 승인하고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- 12) 준공검사 후 검사결과에 따라 준공도면, 준공내역서, 운전매뉴얼, 단위기계점검표 및 사진첩을 작성하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3) 시공자는 현장시공 전에 지역 노동청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비 사용계획내역서를 월별로 구분 제시 승인받아야 하며 계상된 내역은 안전관리비에 사용하여야 한다.

- 14) 분진, 소음, 진동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은 지역 허용기준치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.
- 15) 상시 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자, 감리자, 시공자 상호 협의하여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7. 특기 사항

- 1) 환경보존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.
- 2) 공사 기간내에 무부하 단동 및 연동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품생산 시운전은 법인 실무자 입회하에 정상적인 생산능력이 발휘될 때까지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.
- 3) 공장 운영 요원에 대하여 설치 과정부터 운전 조작이 숙련될 때까지 기술자를 배치하여 훈련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4) 기계시설과 관련하여 타공사 (건축, 건축전기)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은 사전에 협의 조치하여 시공한다.
- 5) 주요 기자재는 카다로그, 도면 또는 참고자료 등을 구비하여 구매, 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제작 또는 현장설치검사는 당 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현장 설치공정 30%, 60%, 90%시 검사요청을 할 수 있다.
- 6) 설계변경은 법인의 사정 또는 현장 시공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으며, 설계변경은 계약조건에 의거 당초 설계도서(단가, 일위대가 등)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한다.
- 7)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선행공정이 진행한 공사내용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실측을 실시하고, 시공계획서를 제출 후 착공하여야 한다.
- 8) 계약상대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비를 하여야 하고, 공사로 인한 민원은 책임을 지며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9)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선행공정의 공사내용과 주변 건물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 완성물에 대한 훼손이나 공사로 인한 주변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기초상태, 건물벽체, 균열 등을 기록하고 사진촬영, 보관한다.
- 10) 계약상대자는 전기 및 통신 등 타 공종과 협조하고 협조사항 발생시 감독자 및 수요처와 법인의 지시에 따른다.
- 11) 현장사무실 내에 현장설명서, 시방서, 설계도면, 계약서, 현장작업일지,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, 공정표를 상시 비치하고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. (전체공정표, 주요공종별 시공계획서, 월 주간공정표, 작업일지)
- 12) 본 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.

8. 기 타 사 항

본 공사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 현장 내 제반공사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공사 기간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 또한 도급 공사비내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. 따라서 인명 및 기존건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산재, 고용, 건강, 연금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사용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처리토록 한다.

○“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”(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) 명시 및 정산방법 알림

-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추후 계약자내역서 작성시 아래사항을 변동없이 반영하여야 하며, 준공시 실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함.

[금액단위:원]

구 분	국민건강보험료	노인장기요양보험료	국민연금보험료	안전관리비	비 고
설계내역서 금액	4,855,803	628,826	6,163,925	20,824,732	

[증빙자료 인정범위]

구분	제출서류	비 고
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	가입증명서 및 완납확인서	
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	관할 납부기관에 사업장명을 개설 신고하고 납부한 납입증명서 ※당해사업장(경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024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(외동DSC) 명의로 신고납부한 납입증명서	-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를 대상으로 하며, 납부금액 중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함. -현장대리인,현장기사,청소원 등에 대한 납부금은 제외
안전관리비	사용된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사용내역서	노무자에게 물품 지급근거, 사진, 감리원 확인 자료 등 증빙자료 포함

※ 보험료 정산 관련법령 및 본회규정

<관계법령>

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의2 (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)

-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보험료등" 이라 한다)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<개정2008.2.29>
- ② 발주자(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,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.

<본회규정>

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2011. 3. 14(월)>

제33조의2(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)

- ① 계약당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(이하 "국민건강보험료 등" 이라 한다)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.
- ② 계약당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
 - 2.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
 - 3.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선정 시(공사비내역서 포함)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
- ③ 계약상대자는, 계약당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,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당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) 기타사항

가. 현장답사

-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설계도면, 시방서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
-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, 노동력, 진입로 및 교통상황,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,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시와 피해 발생시는 인적,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

나. 가설전기 및 수도

- ① 본 공사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사용 가설전기설치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며, 전기요금 [본 수전 이후 발주사무소의 명의로 발급되는 전기사용요금 포함(단, 본 수전 이후

